

#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칙

제정 2025. 6. 13. 제1668호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와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칙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대학원의 학사 운영,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대학원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이라 하며, 있는 곳은 청주교육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교육목표)** 본 교육전문대학원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과 관련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, 초등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그 응용 능력을 길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.

**제4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**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칙」 또는 그 외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2장 학사운영

**제5조(과정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
② 교육전문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④ 교육전문대학원에 필요한 경우 타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학문 간 융합 및 특성화된 교육·연구를 위하여 협동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6조(전공과 정원)** 박사학위과정의 전공과 입학정원은 [별표1]과 같다.

**제7조(학생선발)** ① 학생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방법, 학생선발 일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모집요강 등으로 정한다.

**제8조(합격자 결정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장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,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.

- ② 동점자 처리 기준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- ③ 미등록자가 있는 경우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입학시기)** 교육전문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- 제10조(입학자격)** ① 국내·외에서 관련 분야의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(취득 예정자를 포함한다.)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11조(입학허가, 등록 및 입학취소)** ① 총장이 입학할 허가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람은 입학 후 또는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한 서류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- 제12조(수업연한과 재학연한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한다.
- ② 교육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제13조(학년도와 학기)**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학사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기 시작일을 조정할 수 있다.
1. 제1학기: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
  2. 제2학기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

- 제14조(수업)** ① 수업은 주간제는 주간에, 야간제는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, 1강좌 당 주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.
- ③ 필요한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- 제15조(휴업일)**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하계휴업: 1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8월말까지
  2. 동계휴업: 2학기 수업종료 후부터 2월말까지

3. 관공서의 공휴일

4. 개교기념일: 3월 26일

② 총장은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정할 수 있다.

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 실험·실습 및 그 밖의 교육활동 등을 부과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재입학)** ① 총장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.

③ 재입학은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④ 제2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다.

**제17조(외국인학생·위탁생의 입학과 등록)** ① 제10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외국인

2.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탁생

3. 시·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위탁생

② 외국인학생과 위탁생의 등록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8조(휴학)** ① 휴학을 희망하는 교육전문대학원생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있다.

1. 병역복무기간

2. 질병, 임신, 출산 등과 관련된 기간

3.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이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자녀 1명당 3년 이내의 기간

4. 소속기관의 발령에 의한 해외 파견기간(배우자의 해외 파견으로 인한 동반 휴직기간 포함)과 국내 파견기간

5. 그 밖에 교육전문대학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수업일수 4분의 1이후라도 병역의무, 임신·출산·육아,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,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기간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관련 증빙서류(군입영통지서, 진단서 등)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신입생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받은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회수한다.

**제19조(공결)**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면 공결로 처리하며, 해당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.

1. 「병역법」 및 「예비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소집된 자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에 입원하는 등 출석이 어려운 자(병원급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진단서 첨부)
  3. 경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자(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기준에 따름)
  4. 총장 및 교육전문대학원장이 허가한 공식 행사에 참가한 자(주최기관 발송 공문 첨부)
- ② 제1항에 따라 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결신청서를 교육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공결 기간 중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

**제20조(복학)** ① 휴학한 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복학하여야 하며,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학할 수 있다.  
 ② 복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

**제21조(자퇴)**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2조(제적)** 교육전문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.
2.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
3. 재학연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
4. 이수과목의 평균평점이 2개 학기 연속으로 2.0미만인 자로서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
5. 제적 처분의 징계를 받은 자

**제23조(수료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.  
 ② 제1항에서 수료라 함은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 
 ③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3.0이상이어야 한다.  
 ④ 교육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**제24조(학위수여)** ① 정해진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로서,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  
 ② 그 밖의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(종합시험, 논문심사, 구술시험)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3장 교육과정과 이수

**제25조(교육과정)** ① 교육과정은 전공 단위로 편성하되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석·박사공통과목을 둘 수 있으며, 3학점 3시간 단위의 과목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개정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③ 교과목의 개설, 강의계획서 제출, 강의시간표 편성, 교원 배정 등 교육과정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6조(교과이수단위)**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, 한 학기에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.

**제27조(수강신청)** ① 교육전문대학원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

②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한하여 교육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개설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.

⑤ 개설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5명을 초과할 경우,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.

**제28조(수강학점)** 수강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논문연구학점과 선수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29조(이수학점)** 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36학점 이상과 논문연구학점 6학점으로 한다.

② 논문연구학점은 P/F 제로 평가한다.

③ 이수학점은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.

**제30조(강의시간표)** 강의시간표는 매학기 시작일 이전에 총장이 정하여 이를 발표한다.

**제31조(학업성적)**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점수	평점
A+	95-100	4.5
A°	90-94	4.0
B+	85-89	3.5
B°	80-84	3.0
C+	75-79	2.5
C°	70-74	2.0
F	69점 이하	0

**제32조(타 전공 이수 학점 인정)** ① 교육전문대학원 재학생은 필요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9학점 이내에서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**제33조(학점인정)** ① 재입학자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그 학점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 말로 한다.

③ 인정된 학점이 과오나 부정행위로 밝혀질 경우, 해당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.

**제34조(재이수)** 교과목의 재이수는 낙제한 과목에 한한다.

**제35조(국내·외 대학원 학점인정)** ① 입학 전 국내·외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학점은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 교육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③ 교육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별로 야간제 또는 계절제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**제36조(학점취득)** 수강 교과목의 학점취득은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하고, 성적이 70점(평점 2.0) 이상인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## 제4장 학생

**제37조(학생생활)** 교육전문대학원생은 학칙과 규정을 지키고 인격을 도야하며 학업에 전념하여 학생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원우회 설치)** ①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의욕 고취 및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② 원우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육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

③ 원우회 회장 및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교육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.

④ 원우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39조(원우회비)** ① 원우회장은 원우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원우회 경비는 원우회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 및 집행한다.

**제40조(포상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생으로서 학문적 연구 또는 그 밖에 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였거나, 모범적인 학업 정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1조(징계)** ① 총장은 교육전문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대학원생의 본분을 벗어난 집단적 행위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
2.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
3. 그 밖의 학교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

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
**제42조(박사 후 연수(Post-Doc.)연구원)** ① 박사학위 소지자를 박사 후 연수연구원으로 하여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박사 후 연수연구원에게는 연구실적에 대하여 연구경력증명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 박사 후 연수연구원의 연수 기간은 1년 이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연장할 수 있다.

④ 박사 후 연수연구원의 선발 절차, 등록,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5장 등록금과 장학금

**제43조(등록금 납부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입학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44조(휴학생의 등록금)**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. 단,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할 수 있다.

**제45조(복학생의 등록금)** 휴학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학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46조(수업료 면제)**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1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47조(등록금의 반환)**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등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반환한다.

**제48조(장학금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6장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

**제49조(위원회의 설치)** 교육전문대학원에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**제50조(위원회의 기능)**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나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교육전문대학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
5.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의 교육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51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전문대학원장 및 전공주임교수로 한다.

②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전문대학원장이 된다.

**제52조(위원의 임기)** 교육전문대학원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53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,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## 제7장 직제

**제54조(직제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교육전문대학원장 및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전문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전문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교육전문대학원생을 지도·교육한다.

**제55조(전공주임교수)** ① 교육전문대학원에는 각 세부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전공주임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보하고, 청주교육대학교의 보직 및 교육대학원의 전공주임과 겸하여 임명할 수 있다.

③ 교육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없는 전공은 교육대학원의 전공주임으로 보한다.

④ 전공주임교수는 각 전공의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위논문 지도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.

## 제8장 전임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

**제56조(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)** ① 교육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논문실적 인정 범위는 교육부고시「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 전문학술지: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
2. 국제 전문학술지: SCIE, SSCI, A&HCI
3. 국제 일반학술지: SCOPUS

②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(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. 공동저자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.

1.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 $2/(n+2)$ 편, 기타 공동저자는  $1/(n+2)$ 편으로 인정한다.
2.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,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,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로,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.5배로 인정한다.

④ 교육전문대학원의 소속 전임교원 연구실적은 최근 5년 이내에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구실적 2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57조(전공신설 시)**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전공을 신설하려는 경우,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은 제56조에 따른 연구실적 인정편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학칙과 규정 개정

제58조(학칙 개정)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「청주교육대학교 학칙」 개정 절차에 따른다.

제59조(시행세칙)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5. 6. 13. 제1668호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교육전문대학원 세부 전공과 입학 정원[제6조 관련]

대학원 종류	운영방법	전공	입학 정원
교육전문대학원	주/야간제	윤리·인성교육	33
		초등국어교육	
		수학교육	
		융합과학과영재교육	
		체육교육	
		음악교육학	
		교육학	
		심리·상담·특수교육	
		어린이영어융합교육	
		유아및아동교육	

※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 인가 기준

제 호

## 수료증명서

성 명 : \_\_\_\_\_

생년월일 :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

수료년월일 :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

위 사람은 본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장(학 위) 인

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청주교육대학교 총장 (학 위) 인

제 호

## 연구경력증명서

(학 위) 성명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교육전문대학원 학과의 박사후연수연구원으로서 년 월 일부  
터 년 월 일까지 연구 분야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청주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장(학 위) 인

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청주교육대학교 총장 (학 위) 인